

춘천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8가단4973 판결 [손해배상(기) 및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승완

피 고 B

변론 종결 2020. 12. 8.

판결 선고 2021. 2.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D, E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7가단196호), 위 소송에서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17. 5. 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조정 조항

1. 피고 E, D 및 조정참가인 B(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동두천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원고 A는 이를 매수한다(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원고 A는 2017. 6. 30.까지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중 잔액 5,500만 원을 지급한다(매매대금 중 4,300만 원은 이미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017.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9. 접수 제22372호로)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한다.
4. 원고 A가 제2항의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5. 피고들이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6. 원고 A와 피고들이 모두 제2항 또는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7.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 조항 외에 원, 피고들 간에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잔금 5,500만 원을

준비하였으므로(원고가 가지고 있는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함) 위 돈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위 조정조항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피고는 2017. 6. 22. 최고서를 받았다.

다. 피고와 E 등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기초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 제5항에 따라 5,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다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이 있고,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미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위 조정절차에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기판력을 받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를 기초로 그 내용인 이행의무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이고, 조정이 확정된 당사자인 원고가 전소의 조정참가인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조정이 성립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